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1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백혜련·강훈식·김민기

김병기 • 민형배 • 오영환

유정주・이동주・이원욱

정춘숙 · 홍영표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그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의 승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집행 또는 파산을 겪게 되고 성년이 된 후 자신이 축적한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여,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 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 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 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3항, 제102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9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 인한 것으로 한다.

제10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 ②(생 략)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단서 다만.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설>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생 략) 유) <신 설> ②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 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 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 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